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48940(본소), 2020나2048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 구상금청구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 담당변호사 김한호

피고, 항소인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 담당변호사 김한호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 담당변호사 김한호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28.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8672(본소),
2019가합1207(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 D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하고, 피고 C, D와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6,971,5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I조합(이하 ‘I’이라 한다)과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교회건물의 소유자는 M이었는데, I은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21. 6. 11.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피고 C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등기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 B은 2010. 9. 15.경 원고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3억 4,5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바 없다.

4) 결국,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들의 주장처럼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당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교회건물을 담보로 I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소유명의를 자신과 공동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2010. 9. 15. I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B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고, 원고에게 그 서류들에 도장만

찍고, 사인하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관련 서류들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은 그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다른 피고들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의 소유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C의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628,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56, 대법원 2018도19170)에서는 피고 B, C이 이 사건 교회건물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면, 대출금을 갚고 소유권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대출금 3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의 소유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더라도(실제로도 이 사건 교회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C이, 각 경료하였다),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2021. 6.경 피고 B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은 4년여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 B은 당심에서 그 동안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한 진술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